

(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-참조1)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정 용 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71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3. 2. 12

발 의 자 : 정용한, 한성심, 김순례, 박창순

정기영, 김재노, 김해숙, 김유석

강상태, 지관근, 이영신(이상 11명)

1. 제안이유

-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편성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,
- 제2차 정례회의 과중한 의회일정을 감안, 행정사무 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25일 이내로 개정(안 제3조제1호)
-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며,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(안 제6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단서조항 중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한다.

제6조를 제1항 중 “법 제134조” 앞에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를 삽입하고,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^의 행정사무감사^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.”

제6조 제2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를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제2차”를 “제1차”로 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회기) (생략) 1.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한다. 2. (생략) 제6조(정례회 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(단서신설)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제3조(회기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25일 ----- . 2.(현행과 같음) 제6조(정례회 심의) ① -----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----- -----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.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【관제법령 발췌】

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1항, 제44조, 제127조, 제134조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44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·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